

| 지면보수교육 |

산재보험법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보상사례



김 태 수 / 근로복지공단

1. 사업장 소개

소리의 크기는 고막에 전달되는 기계적 음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소리의 주파수와 그 밖의 성질은 작업에 지장을 준다. 강도가 일정한 소리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청력 장애를 일으키기 쉽고 고주파음은 주의력과 사고력에 지장을 주기 쉽다. 음압이 85dB를 넘고 8시간 이상 계속 되면 청력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난청에는 소음에 만성적으로 폭로되어 있

는 동안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소음성 난청과 소음성난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심한 폭로 없이 돌발적으로 또는 수십 시간에 급속히 발생하는 소음성 돌발성 난청이 있으며,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이라 함은「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을 말한다.

■ 순음청력치와 일상생활속의 소리와 비교

순음청력치(dB(A))	일상생활속의 소리
60 dB	일상의 대화소리, 전화벨 소리
70 dB	식당의 소음, 가까이서 듣는 성악가 소리
80 dB	대도시 교통소음, 시계의 알람, 공장소음, 진공청소기소리
90 dB	지하철 소음, 오토바이소리
100 dB	전기톱정도의 소음강도
110 dB	나이트클럽 수준의 소음
120 dB	Rock공연장, 천둥소리
130 dB	비행장 소음, 총소리

현대의학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귀 치료를 위해 이비인후과에 통원하였다 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한 치료를 위한 요양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산재보상은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진단비용 및 장해급여가 인정된다.

소음성 난청 인정요건

산재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음성난청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으로 발생되므로 허용기준치가 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허용기준 이하의 소음상태에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청력장애진단 기준에 따른 청력검사소견 상 소음성난청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도 행정해석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작업장을 떠나면 거의 증악 되지 않고 소음에 노출이 계속되는 한 그 증상은 계속 증악되는 성질을 갖고 있고 또한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청구사유가 발생되므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사유는 「당해근로자

가 직업성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 즉 현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의 진행여부를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된 때에 발생한다.

소음성 난청에 의해 장해보상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소음이 발하는 장소에서 종사한 사실이 없다면 당초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보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청력손실이 업무상과 업무외의 두 가지 원인이 혼합되었을 경우 업무외의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청력의 경우에 있어 이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예가 대부분이므로 업무상과 업무외의 청력손실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장해를 인정하고 있다.

청력장애의 인정기준

청력장애의 평가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와 미국표준협회(ASA, American Standard Association)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으며 현실 의학계에서는 ISO기준이 일반화되어 있고 산재보상기준도에 따르고 있다.

ISO(1964)기준에 의하면 정상 위는 10~26dB이며 91dB이상이 되면 농(聾:귀머거리)으로 구분하는데 환자가 40dB 이하의

■ 청력장애 표현법 비교

ISO기준 청력소실(dB)(1964년)	표 현 법	
10 ~ 26	normal limits	정상역
27 ~ 40	mild hearing loss	경도난청
41 ~ 55	mdderate hearing loss	중등도난청
56 ~ 70	mdderately severe hearing loss	중등도난청
71 ~ 90	severe hearing loss	고도난청
91이상	profound hearing loss	농

■ 순음청력치에 의한 장애등급표

다른귀 한귀	90dB이상	80dB이상 90dB미만	70dB이상 60dB미만	60dB이상 70dB미만	50dB이상 60dB미만	40dB이상 50dB미만	40dB미만
90dB이상	제4급3호	제6급3호	제6급4호	제7급3호	제9급8호	제9급9호	
80dB이상 90dB미만						제10급4호	
70dB이상 80dB미만	제6급4호	제7급 2호		제9급7호	제11급4호		
60dB이상 70dB미만	제7급3호	제9급7호				제14급11호	
50dB이상 60dB미만	제9급8호		제10급5호				
40dB이상 50dB미만	제9급9호	제10급4호	제11급4호	제11급11호			
40dB미만				제14급11호			

청력손실이 있으면 환자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으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는귀가 먹었다고 느끼게 되고 40dB 이상이 되면 환자 자신도 청력장애를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청력 소실치 40dB를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저청력요구치(Socially serviceable hearing level)라 하며 취업여부의 경계치로 삼고 있으므로 산재보상에서도 40dB이상부터 청력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청력장애의 등급은 순음에 의한 청력레벨(Audiometer에 의하여 청력을 측정하며 데시벨 dB로 표시)과 어음에 의한 청력검사 결과(어음명료도)를 기초로 하여 인정한다.

청력손실에 의한 측정치가 41~59dB로서 어음명료도 검사상 최량명료도가 50%미만인 경우에는 한 귀는 제11급, 두 귀는 제7급으로 하고, 최량명료도가 50%이상이거나 어음명료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 귀는 제14급, 두 귀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

소음청 난청에 대한 산재보상 사례

사례 1. 기계가공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난청

- 근무경력 : 1991.3~2002.2. 철판가공, 철판절단, 제관, 용접, 사상작업
- 작업환경 : 철판제단, 제관, 용접, 사상, 연마작업 등 고소음작업에 종사하였고, 소음방지시설 및 안전장구 미비,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 미지급, 작업환경측정 이루어지지 않음
- 의학적 소견 : 2002.2.퇴사 후 2002.3.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과거력상 이질환력, 약물복용력(항생제복용 등), 두부외상 등의 특이병력 없음
- 청력검사상 중이검사에서 중이의 외상이 없고 기도와 골도의 청력손실이 있는 심도의 감각신경성난청으로서, 우측 83, 좌측 71의 평균청력손실,
- 결론 : 지속적인 소음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 (승인)

사례 2. 자동차 판금 정비공에 발생한 이명 및 청력장애

- 근무경력 : 1996. 3. 입사, 자동차정비업체 판금작업, 2000.6. 이명진단
- 작업환경 : 작업환경 측정된 적 없음, 판금작업장의 망치, 글라인더 등의 소음수준은 86.3dBHL,
- 의학적 소견 : 순음청력검사상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청력소실치 우측 20.8, 좌측 24.2, 중이검사상 이상 없음
- 결론 : 작업장 소음이 소음노출기준을 초과, 청력역치손실은 보상기준에 미달하지만, 이명(귀가 울림)은 지속적인 소음노출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높음 (승인)

사례 3. 건설공사현장에서 습식 뿔칠작업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

- 근무경력 : 2001.7.22. 입사, 공사현장 내 화피복 습식뿔칠기계기사, 2001.10.13. 순간적인 소음노출,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진단
- 작업환경 : 습식뿔칠은 철골에 분사하는 작업으로 소음과 먼지가 심하여 귀마개를 하고, 4~5명의 근로자 1조로 작업을 함, 작업을 위해 전원을 넣는 순간 갑작스런 소음에 한쪽 귀를 감싸면서 안 들린다 호소
- 의학적 소견 : 재해발생일 이전 관련 질환 진료기록 없음, 순음청력검사상기도치 우측 21, 좌측 62, 뇌간청성유발검사상 우측은 정상, 좌측은 75~85dB에서 역치 소견
- 결론 : 뿔칠기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함이 인정되고, 귀마개를 착용

하였다 하여 돌발성 난청이 발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승인)

사례 4. 생산부에서 감속기 조립작업을 하던 근로자에서 발생한 난청

- 근무경력 : 1988. 1. 입사, 감속기 조립작업, 2001.12. 퇴사, 3~4년 전부터 이명과 난청이 있었으나 치료받지 않음
- 작업환경 : 2002년 작업환경측정시 74~76dB, 소음발생공정인 선반 및 도장은 재해자의 작업위치로부터 3~5m 정도 떨어져 있고 소음수준도 80dB를 넘지 않음
- 의학적 소견 : 청각검사상 중이의 이상이 없고, 기도와 골도의 청력손실이 있는 중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51, 좌측 51dB), 청력에 영향을 줄 과거병력 없음
- 결론 : 순음청력검사 결과 감각신경성난청이나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이지 않으며, 80dB(A)이하의 소음노출로 역치손실로 보기 어려움(불승인)

사례 5. 보일러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 근무경력 : 1979년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 1995. D사에 근무하면서 이명과 청각장애 악화, 1997년부터 보청기 착용 주장
- 작업환경 : 재해자가 근무한 보일러실은 비소음부서로 분류되어 작업환경측정을 한 적이 없었고, 보일러공은 일반적인 관리 및 수리 업무를 하며 간헐적인 소음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근무시간 내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
- 의학적 소견 : 과거 소음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1999년 특수건강

진단결과 소음성난청(우측 86.7, 좌측 81.7dB)의 소견을 보임, 고막운동성 검사에서는 정상고막운동형태의 A형이었으나, 등골근반사검사에서는 좌우측이 모두 1,000Hz에서 반사역치를 보이지 않음, 과거력에서 1979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청력장애판정이 확인되고, 1989년 감각신경성난청 진단받고 보청기 착용 확인

- 결론 : 순음청력검사에서 감각신경성난청이나, 작업장이 소음발생작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과거력에서 청력장애와 보청기 착용력이 확인되므로 작업 중 소음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가능성은 없음. (불승인)

